

# 정보통신안테나

## 대통령 지시사항

- 제11회 「신경제」 추진회의

## 입법예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 공포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중 개정령

## 기타

-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기획단」 설치운영(안)
-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전담반」 설치(안)
-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세칙(안)

## 대통령 지시사항

# 제11회 「신경제」 추진회의

(지시일 94. 7. 2)

###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 무한경쟁시대에서 사회간접자본의 수준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인의 하나임. 오늘날 선진국과 우리의 경쟁국들은 모두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우리의 경우에는 사회간접자본 부족이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제약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은 그야말로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추진해야 할 과제임(훈시).
- 고속도로, 고속전철, 신공항, 초고속정보통신망 등은 장래 동북아경제권에서 우리가 차지할 위상까지 고려하여 계획하고 추진해야 함. 이 분야 정책해당자들도 21세기에 다가올 선진조국을 비전을 갖고 일을 추진해 주기 바람(계획수립).
-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는 막대한 투자재원이 소요되므로 정부와 더불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로써 재원을 확보해야 함. 민자유치법의 제정으로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확신하며, 여기에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음(계획수립).
- 사회간접자본 건설은 정부부처간의 협조가 특별히 필요한 분야이므로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건설과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임(훈시).
- 사회간접자본 분야의 정책담당자와 근로자는

국가기간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며 신경제건설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자세로 일해 주기 바람(훈시).

- 내년 6월의 「신경제추진회의」에서는 오늘 보고한 각 부처의 업무추진 실적을 점검하겠으며, 그 때에는 더 좋고 자신있는 모든 사람의 평가가 있기를 바람(훈시).

## 입법예고

◎ 재무부공고 제1994-48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공고일 94. 7. 12)

### 제정취지

신용정보의 효율적 관리·이용을 위해 신용정보업을 육성하는 한편,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업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신용조사업(제3자의 의뢰에 의하여 타인의 신용정보를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 신용조회업(신용정보를 수집·가공·저장 또는 처리하고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및 채권추심업(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신용불량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채권자로부터 변제금 수령 또는 채권보전·경매신

청·소송 기타 법적절차의 의뢰 대행등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행위)을 영위할 수 있음.

나. 자본금 규모는 100억원이상으로 하여 대외 공신력을 제고시킴. 다만, 신용조사업만을 영위하는 자는 5천만원이상으로 함.

다.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 공동전산망 구축등을 통하여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하는 자)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가 허용되는 공공기록정보의 열람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에 대하여 집중교환·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하여금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을 구축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신용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 ① 국가안보·기업비밀·개인사생활 관련정보 등에 관한 신용정보의 수집 및 조사를 금지하고
- ② 개인신용정보는 당해 개인과의 신용거래 관계 설정 및 유지여부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도록 제한하고
- ③ 신용정보 활용체제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 ④ 금융기관, 백화점, 할부판매 회사등이 개인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를 받게 하고
- ⑤ 개인신용정보주체에 대해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권을 인정하고
- ⑥ 고의나 과실로 신용정보주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 신용정보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음.

바. 신용조사업법은 이 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폐지

하며 기존의 신용조사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 법에 의한 인가를 받도록 함.

## 공포

◎ 대통령령 제 14, 332호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94. 7. 20)

### 제정이유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1994. 1. 5, 법률 제4702호)됨에 따라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령 제2조).
- 나.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하여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의 범위를 정함(령 제3조).
- 다.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설치신고, 보호시설의 설치허가 및 전담의료기관의 지칭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함(령 제4조)  
<법제처 제공>

◎ 대통령령 제 14, 330호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중 개정령

(공포일 94. 7. 20)

### 개정이유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1993. 12. 27. 법률 제4619호)됨에 따라 방위산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방위산업심의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국방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부처 장관에서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하향조정함(령 제9조제1항, 제2항).
- 나. 방위산업체는 국방부장관이 통보한 생산계획물량중 당해년도 계획물량을 당해년도 조달조약전에 생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품질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령 제13조제3항).
- 다. 최근 2년이내에 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후 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품목은 새로 원가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계약실적단가에 생산자물가 기본지수별 등락율을 반영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함(령 제32조제1항제2호).
- 라. 방산업체의 휴지 또는 폐지의 승인은 상공자원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행하되, 주요 방산업체의 폐지를 승인하고자 할 때는 방위산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령 제40조의 4).

다.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함(령 제41조의 3). <법제처 제공>

## 기타

#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 기획단」 설치·운영(안)

### 근거

-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 및 운영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체신부에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기획단」을 설치·운영

### 기본방침

#### 가. 설치방침

- 부단장이하 기획단 구성원은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관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각부처의 분야별 전담반과 긴밀한 연계·협력체제 유지
- 망구축자문위원회를 통해 산·학·연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반영

#### 나. 운영방침

-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
- 기획단의 운영비는 통신사업특별회계 등으로 편성·집행토록 함
- 단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업무추진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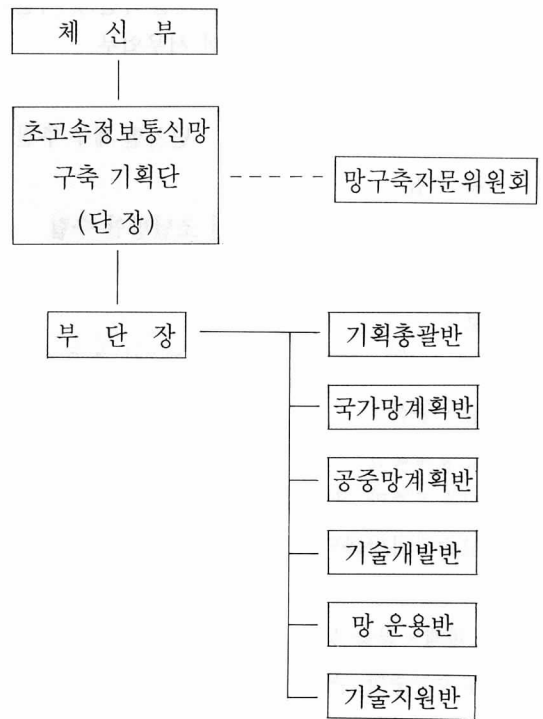
함.

-정원의 범위내에서 반간의 정원조정 및 관장 업무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기타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도록 함.

설치(안)

#### 가. 조직체계



#### 나. 조직규모

- 1단장 1부단장 6개반(총 48명으로 구성)

구분	계	단장 (1급)	부단장 (2-3급)	반장 (4급)	담당 (5급)	직원및 기능직
기획단 전체 (공무원)	48 (24)	1 (1)	1 (1)	6 (4)	16 (6)	24 (12)

다. 관장업무

■ 기획총괄반

-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계획 총괄 및 종합 심사분석·평가
-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관련 법령 및 제도검토
- 초고속정보통신 수요조사 및 공공부문의 신규서비스 개발·지원
- 민간부문의 초고속관련 서비스개발 촉진 및 지원
- 실무위 간사업무 및 기획단의 서무업무

■ 국가망계획반

- 초고속국가망 구축의 단계별·년차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초고속국가망 구축 소요재원 조달방안 수립
- 초고속국가망 년도별 예산계획(안) 편성 및 확보
- 공공전산망(국가기간전산망 등)의 수용계획 수립·추진

■ 공중망계획반

- 초고속공중망 구축의 추진계획 심의·조정
- 초고속국가망과의 연계 추진방안 수립
- 초고속공중망 구축을 위한 민간 투자촉진 제도수립(세제·금융 등)
- 초고속공중망 구축의 사업자별 진도관리

■ 기술개발반

- 초고속정보통신망 관련 기술개발 기본계획 수립
-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조사 분석
- 기술개발 기관간 협력·지원
- 연구·개발업무 지원

■ 망 운용반

- 선도시험망 구축·운용
- 선도시험망을 이용한 기술개발 과제 선정·지원

- 「정보화 시범지역」구축사업 추진
- 시범사업 구축·개발 등의 관련업무
- 전산망간 연동 운영기술 개발
- 망 보안성·안전성·신뢰성 등에 관한 대책수립
- 기술지원반
  - 초고속정보통신망 관련 제품의 표준화 추진
  - 시험·인증 등을 위한 기술기준·규격·표준 등의 제정
  - 핵심기술의 국제적 협력방안 지원
  - 개발된 기술의 관리 및 이용촉진

##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전담반」설치(안)

### 근거

-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9조에 의하여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의 지원 및 이용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주무부처에 전담반을 구성·운영 전담반설치(안)
-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의 기반이 되는 관련산업, 인력양성 등 공급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는 우선적으로 설치
  - 기기산업(상공자원부), 방송산업(공보처), 연구개발(과학기술처), 정보인력(교육부), 문화·영상산업(문화체육부)등 5개의 전담반 설치
-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요부처는 대상사업의 규모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설치

- 지방행정분야(내무부), 국방분야(국방부),  
의료·복지분야(보건사회부), 물류·관광분야  
(교통부) 등 4개의 전담반 설치

- 기타 부처는 자체적으로 개발과제를 선정·추진  
하되 전담반 구성이 필요할 경우 추후 설치

#### 전담반별 추진과제

##### ① 기기산업(상공자원부)

- 멀티미디어산업 육성계획 수립·추진
- 관련기기 및 시스템부문의 산업기술개발
- 산업·기업정보화 관련 DB의 구축
- 제조업경쟁력강화사업과 연계방안 수립·추진

##### ② 방송산업(공보처)

- 방송·영상·신문·잡지 등 언론매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 종합유선방송의 초고속망 연계방안 강구
- 뉴미디어 방송산업의 도입 등

##### ③ 연구개발(과학기술처)

- 정보처리기반기술의 개발
- 한글정보처리기술 등 초고속정보통신관련 S/W  
기술개발
- 고급전문인력의 양성
- 연구전산망체제 정비

##### ④ 정보인력(교육부)

- 새로운 교육제도 및 교육방법의 강구·보급
-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 대·중·소도시 및 농촌, 격·오지등에 원격교육  
체계 마련
- 도서관관련 DB구축 및 개발
- 멀티미디어 응용학습 프로그램 개발(각급 학년  
별)

##### ⑤ 문화·영상산업(문화체육부)

- 문화예술, 체육정보시스템 구축(도서, 출판, 음  
악, 미술, 역사 등 포괄)
- 전자도서관, 전자미술관, 전자박물관 등 구축
- 지적재산권 보호방안 강구
- 영상산업 진흥방안 강구

##### ⑥ 지방행정(내무부)

- 민원서류 전산교부 등 초고속망의 대상이 되는  
민원서비스 개발
- 통합신분증(주민, 의료, 운전, 자격, 경력 등)  
체계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종합정보통신망 구축
- 토지정보, 주민정보 등 기반정보의 공동이용체제  
구축

##### ⑦ 국방(국방부)

- 국방전산망체제 정비(국방용 초고속통신수요  
반영, 국방자료의 보호체계 마련 등)
- 국방부, 각군 본부간 화상회의 추진

##### ⑧ 의료·복지(보건사회부)

- 원격진료시스템 구축방안 수립
- 종합의약정보통신망(의료보험, 진료기록, 의료관  
리, 약품관리)구축
- 국민복지정보통신망 추진
- 응급진료정보통신망 구축방안 수립(경찰서, 소방  
서 등과 협조)

##### ⑨ 교통·물류(교통부)

- 종합물류정보시스템 구축
- 도로교통정보시스템 구축(경찰청, 건설부와 협  
조)
- 관광정보시스템 구축

## 기타 부처별 세부추진 과제

부 처	주 요 추 진 과 제
재 무 부	○초고속망 구축관련 금융·세제지원방안 검토 ○첨단정보통신기술 보유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촉진 ○종합세제 실현을 위한 세정분야의 초고속망 활용
건 설 부	○지리정보관련 DB구축 ○건설행정, 지가·주택가격관리 등 ○도로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총 무 처	○행정전산망체제 정비 ○공공기관 정보공개 및 보안관리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 관련 행정조직 정비
환 경 처	○환경감시 및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환경관리 종합시스템 구축(대기, 수질, 폐기물 등)

##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세칙(안)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 규정(이하 "위원회규정"이라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개최) 위원장은 일부 관련 위원간

협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와는 별도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3조(의안의 제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별지 서식에 의거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소집)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서면의결)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제6조(회의결과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결과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위원회의 준용) 제2조 내지 제7조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부 칙

이 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 정보통신산업을 선도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